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772 모욕
피 고 인	배복순 (531212-20000000), 무직 주거 평택시 0000000000000000 부영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리 57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O우(기소), 박O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O민(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22. 선고 2024고단278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관리사무소장의) 인성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상대 가치가 없다’, ‘선량한 소장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한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 피고인의 판단과 비판,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이를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받아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읽어보리라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관리사무소장 업무수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대표번호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특히 먼저 전화통화로 그 뜻을 전하려 하였으나 수차례 전화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부득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¹⁾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기간은 2023. 4. 13.부터 2023. 5. 1.까지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경우,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일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달리 2023. 4. 24. 07:59경이 아닌 2023. 4. 12. 22:50경이므로 위 범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2023. 5. 9. 11:33경 전송)과 연번 4번(2023. 5. 18. 09:37경 전송)도 위 범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범죄일람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문자메시지를 2023. 4. 12. 22:50경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공판기록 43~44면, 피고인이 제출한 첨부자료1),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게시일시를 2023. 4. 12. 22:50경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또한 공소장에는 “2023. 5. 28.경까지” 피고인을 모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에 첨

피고인은 평택시 이충로 93-20, 부영아파트 302동 404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정○애는 위 부영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22:50경 위 부영아파트 3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전화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위반하는 소장하고는 더 이상 상대성이 없고 인성에 문제가 심각하니 위반해도 되는 아파트를 찾아서 가십시오’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고, ② 아파트 동대표를 지내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 이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공연성을 인식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③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그 메시지의 내용, 전송한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

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4번의 게시일시가 “23. 5. 18. 09:37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기간 “2023. 5. 1.경까지” 부분은 “2023. 5. 18.경까지”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만한 표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나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및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도179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할 정도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평택시 부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위 부영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나) 위 아파트는 민원 대응 목적 및 업무상 전화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컴퓨터에 대표전화와 연동되는 프로그램(KT 통화메신저)을 설치하여두었는데, 위 프로그램은 자동실행 되어있어 입주민들이 대표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문자메시지를 보낸 입주민들의 전화번호, 메시지 내용 등을 각각의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185~186면, 575~578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대표도 맡은 적이 있는 등 관리사무소의 민원처리 업무 과정에 대하여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24~25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관리사무소 대표전화를 통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특정 직원을 지칭하며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왔고, 이에 다른 직원들도 대표전화로 피고인의 민원을 응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13면, 59~6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관리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인성에 문제가 심각하다’, ‘악녀’라는 표현은 사회 일상에서의 그 사

용례, 빈도 등에 비추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러한 점과 앞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각 메시지들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의 각 표현의 의미와 정도, 표현방법,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메시지는 민원인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피해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